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

제정 2008. 11. 11 조례 제1628호 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원칙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3조(지원대상) ①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동 축제위원회 에 지원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,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보조금) ① 동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.〈개정 2016. 9. 26〉
 -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·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(보조금의 반납)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 - 1.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 -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

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

- 4.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 · 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
- 제7조(포상)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 여할 수 있다.
- 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·교부·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〈개정 2016. 9. 26〉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